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2019. 3

국 방 부

Ⅰ. 개 요

□ '1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

-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및 중점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등 범정부 주요대책을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관리
- 성과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 및 관리책임 강화로 성과창출 유도

○ **성과 경쟁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조직성과 및 정책품질 개선
- 평가결과의 개인성과평가 연계 강화로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
  * 실·국장급 개인성과평가 시 자체평가 결과 100% 반영, 과장급 40% 반영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지원**

-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 반영 및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국민 체감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

-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평가 타당성 및 피평가부서의 수용도 제고
-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 및 활용으로 평가 신뢰성 제고

□ 수립 경과

○ 201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 : 3. 4.

○ 성과관리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 작성 관련 컨설팅 : 3. 12.

○ 2019년 자체평가계획(안) 초안 작성 : 3. 15.
  * '18년 국조실 자체평가 점검결과 분석 및 '19년 국조실 지침 반영

○ 평가위원·피평가부서 대상 자체평가계획(안) 의견수렴 : 3. 18. ~ 2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도 운영방식,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등

○ 의견수렴 결과 반영, 자체평가계획(안) 수정·보완 : 3. 22.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3. 25.

□ '18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제도 운영방식】

○ **자체평가 내실화 도모**

-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지표의 타당성 점검을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각 소위별 평가결과를 확인·조정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기존 : 소위별 평가 → 전체회의 심의·의결
    개선 : 소위별 평가 → 소위별 평가결과 점검 → 전체회의 심의·의결

○ **평가위원과 피평가부서 간 소통 활성화**

- 각 소위별 정책설명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평가위원들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피평가부서의 수용도 제고
- 정책설명회 및 현장방문에 대한 가감점 기준을 강화하여 소통 활성화 유도

【평가지표 체계】

○ **평가지표의 가중치 및 가점 조정**

-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정부기조*를 반영, '성과 달성도' 항목의 비중을 강화 (20점→25점)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국조실, '19년 국정과제 세부 평가기준 중 '목표달성' 배점 강화 (40점 → 60점)

- 성과 달성여부 판단시,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의 난이도'를 같이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
- 인권 보호,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해 가점 부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

- 국민들의 인식도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책홍보 강화 (7점→10점)
- 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전반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기준 탄력적 적용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28명 (100%)	13명 (46%)	14명 (50%)	-	-	-	27명 -	1명 (4%)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소위원회 임무

○ 전체위원회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등 주요안건 검토·의결
- 자체평가 결과의 종합 및 조정, 심의·의결

○ 소위원회

- 자체평가 분야의 각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 자체평가 분야의 각 과제별 개선의견 제시 등 자문

□ 소위원회 구성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 주요정책분과는 과제별 정책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 활용, 5개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의사결정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별 사전심사 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사전심의 및 평가 대면회의 개최 최소 1주 전에 관련 실적보고서 및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기간 부여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기획총괄담당관 **(자체평가 총괄팀)**	- 부문별 자체평가업무 총괄·조정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계획 수립·추진 - 자체평가 실시 지원·종합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정보화정책담당관 **(재정사업팀)**	- 부문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계획 수립·추진 - 자체평가 실시 지원·종합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사이버정책담당관 **(행정관리역량팀)**	- 부문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계획 수립·추진 - 자체평가 실시 지원·종합

□ 평가지원팀의 운영

○ 기획총괄담당관은 자체평가를 총괄하여 상시 운영·지원하고,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 재정사업팀은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 시행

○ 행정관리역량팀은 인사·조직·정보화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중 64개 과(팀), 60개 관리과제

< 소위원회별 평가대상 과제(안) >

담당 과(팀)	관리과제	소위원회
기본정책과	1. 중장기 국방정책 기획·발전 및 홍보	1소위
정책기획과	2. 단기 국방정책 기획·조정 및 전략적 소통 강화	
사이버정책과/ 사이버대응기술팀	3.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능력 강화	
재난관리지원과	4.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장비관리과	5.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 및 정비정책 추진	
탄약관리과	6. 탄약지속능력 향상	
교육훈련정책과	7.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정신전력문화정책과	8. 문화예술을 접목한 군 정신전력 강화	
북한정책과	9.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기초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증진	
군비통제과	10. 군비통제 정책발전 및 기반 강화	
북핵대응정책과	11.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및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 발전	
미사일우주정책과	12. 미사일 및 국방 우주정책 발전	
전력계획과	13.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	
지휘부대구조 개편과	1. 상부지휘구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추진	2소위
조직총괄과	2. 50만명으로 병력감축 및 군조직 정예화	
부대건설사업과	3. 부대개편 시설사업 추진	
전력구조개편과	4.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추진	
인사교육개혁과 자원관리개혁과	5.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 추진	
자원관리개혁과	6.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동원기획과	7. 동원지원 및 연습지원체계 발전	
자원동원과	8. 동원자원 관리 및 집행의 실효성 제고	
예비전력과	9.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및 발전	
전력정책과	10.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전력정책과	11.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산수출 지원 강화	
전력조정평가과	12.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미국정책과	1. 상호보완적인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3소위
방위정책과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3.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및 후속조치	
국제정책과	4.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담당 과(팀)	관리과제	소위원회
동북아정책과	5. 주변국들과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추진	
다자안보정책과	6. 다자안보협력 강화 및 아세안과 국방협력 활성화로 신남방정책 지원	
국제평화협력과	7.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군공항이전사업단	8.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국방환경협력팀	9. 군 소음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설제도기술과	10. 합리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군사시설 기준 개선	
국유재산과	11. 군 사용 재산의 관리·활용 효율화 및 합리화 추진	
시설기획과	12. 군사시설과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조직관리과	1.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4소위
인력정책과	2. 군 인력획득 및 복무체계 개선	
국방여성가족정책과	3.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인사기획관리과	4. 미래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군무원정책과	5. 군무원 채용률 향상 추진 및 우수인력 획득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운영예산과/전력유지예산과	6.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계획예산총괄과/재정회계과	7.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용	
군수기획과/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8. 국방 군수혁신 추진	
건설관리과	9.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정보화기획과	10.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	
정보화기반체계과	11. 국방환경변화에 대비한 국방인프라 조성	
소프트웨어융합과	12. 스마트한 ICT 정보융합 추진	
복지정책과	1.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복무여건 개선	5소위
물자관리과	2. 급식 및 피복 질 향상	
보건정책과	3. 국방 의료시스템 개선	
주거정책팀	4.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전직지원정책과	5.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강화	
군인연금과	6.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운영	
인권과	7. 장병 인권보호 강화	
법무담당관	8. 군 사법제도 개혁	
병영정책과	9. 생명 존중의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	
인적자원개발과	10.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지원 확대	
정책홍보과	11. 군에 대한 신뢰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평가 제외 : 11개 과

○ 정부 공통의 행정지원부서와 과제 설정 및 성과 측정·평가가 부적절한 과제 담당부서는 자체평가에서 제외

2.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

□ 평가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다만,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평가지표)** 부처 자율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

○ **(평가등급)**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상대평가 비율)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예산심의 시 활용

□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월~4월) → 오류검증(5월) → 평가결과 예산실 통보 및 평가결과 대외공개(5월말)

< R&D 평가 >

□ 평가대상

○ 전체 정부R&D 사업 중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 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상위평가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인·점검(상위평가)

○ **(평가지표)** 과기정통부에서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 2개 부문 3개 평가지표를 개발·제시

○ **(평가등급)**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뒤 5등급으로 구분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확인·점검결과 자체평가 점수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자체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 차이의 10% 추가 감점

□ 평가결과의 활용

○ 부처 자체평가 책임성 강화 및 상위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 간 연계**를 지속 추진

* 상위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 감액

□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3월) → 평가결과 과기정통부에 제출(3월말) → 상위평가 실시(4~6월 초) → 평가결과 부처 통보(7월) → 대외공개(9~10월)

< 재난안전사업 >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평가가 중복되는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 등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자체평가(부처) → 피해유형별 평가(행안부) → 결과 종합(행안부) → 의견제시(부처) → 평가결과 확정(행안부)

○ **(평가지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제시

○ **(평가등급)** 자체평가 결과와 피해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 상대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 상대평가 비율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평가결과의 활용

○ **(예산 연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기재부 예산 편성 연계

○ **(결과 활용)** 인센티브 제공(재난관리평가 반영, 정부포상 추진), 정부장·차관급 회의 안건 상정, 평가결과 공개, 언론보도 등 홍보

□ 추진 일정

○ **(자체평가)** 각 부처 자체평가 착수(1월) → 성과보고서 제출(2월) → 자체평가 결과 제출(3월)

○ **(피해유형별 평가)** 각 부처 성과보고서 제출(2월) → 피해유형별 분석·평가(3월)

○ **(결과 종합)** 자체평가·피해유형별 평가 결과 종합·검토(3월) → 대면 평가(4월) → 평가결과 부처 통보(4월) → 평가결과 기재부 송부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반영(5월)

< 균형발전사업 >

□ 평가대상

○ 부처의 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성 경비, 10억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부처)→ 상위평가*(균형위) → 이의신청(부처) → 최종결과 통보(균형위)

*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균형위가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 부처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사업별로 재평가 실시

○ **(평가지표)** 개별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한 성과분석 등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도입

- 평가지표(사업 기획・집행・성과)는 균형위에서 제시하고,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부처 자율적으로 설정(균형위 점검)

○ **(평가등급)**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상대평가 비율)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및 **사업구조 개선** 등에 반영토록 조치

-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권고 및 컨설팅 중심의 심층평가 실시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사업체계 개편 유도
- 우수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 추진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1~2월)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균형위에 제출(2월말) → 균형위 종합평가(3~4월) → 사업별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대통령 보고(4~5월)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

□ **평가 방법**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

□ **평가 결과의 활용**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는 **부처 간에 공유**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 종합 우수부처 인센티브(정부포상 등) 부여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평가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각 부처별 **개선방안 강구**

- 미흡한 부처는 정원감사 등 운영실태를 심층 점검 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추진 일정**

○ 자체평가 실시(1월) →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2월)→ 점검결과 정평위 보고(3월)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 평가지표 체계 및 측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정책의 타당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이 과제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정책수단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치의 적극성
시행 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정책홍보활동 및 성과	○ 정책홍보 추진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의 충실성 여부 등 홍보노력 및 성과를 평가
	협 업 도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시행계획상 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성과달성의 난이도	○ 과제 수행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나 장애요소로 인해 성과 달성이 어려운 정도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정책환류 및 소통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정책·사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全 단계에서 적극적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환류노력의 충실성	○ 자체평가 결과 등의 개선조치계획 수립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재정사업 평가결과, 기타 국회·감사원, 민원 등 외부 지적사항 개선 ○ 정책개선 조치계획 이행실적
가감점	성과관리 기여도	○ 특정평가(국정과제 등) 추진 노력도 ○ 자체평가 성실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표설정 여부
	리스크/갈등 관리·대응도	○ 국방관련 리스크 및 갈등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 상황 발생시 적기 대응 및 적극적인 홍보·소통 노력을 통한 성과를 평가
	성과 우수사례	○ 성과창출 '우수사례' 평가점수

2.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재정사업

○ 계획·관리·성과환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적용 평가

□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조직 (35)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20)	①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② 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수립	
		③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④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	
		<선택>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
	정책품질 (15)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③ 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	
인사 (30)	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선택>	상시학습 이수비율 전문직위 지정 비율
정보화 (35)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③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5)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과제담당부서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사전검토

○ 평가총괄부서에서 **정량평가** 사항 점검 및 증빙자료 확인 후 검토의견 제시

< 주요 점검사항 >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검 내용 및 의견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자료 확인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	▪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 준수여부 및 지연과제 수 점검
	상황변화 대응성	▪ 증빙자료(제출자료)의 적정성 여부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실적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 수치 및 측정산식 오류 등 점검
정책환류 및 소통	현장의견 수렴여부	▪ 증빙자료(제출자료)의 적정성 여부
	정책환류 여부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및 재정사업 평가결과(미흡·지적사항)의 개선·반영여부 확인
가 감 점	리스크 관리	▪ 당해연도 평가대상 '국방리스크 및 갈등관리과제' 선정 및 통보 ▪ 평가 해당부서 제출자료 확인·점검
	성과 우수사례	▪ 소위별 성과 우수사례 종합하여 별도 심의·평가 추진
	성과관리 기여도	▪ 특정평가(국정과제 등) 기여도 및 자체평가 성실도를 총괄부서의 연간 관리자료로 정량평가 - 국정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집행이행도 평가 결과 -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성과관리 교육참석, 자료 작성 충실성 등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 프로세스》

◈ **1단계 : 평가자료 평가위원 송부 (회의 최소 7일전)**
- 평가위원 평가자료 사전검토

◈ **2단계 : 제1차 전체회의 소집 (과제 추진실적 설명회)**
- 평가 실시 전, 전체 자체평가위원 대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
  * 소위원회별 평가위원과 평가대상 부서 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세부 평가방향 설정

◈ **3단계 : 위원별 개별 평가**
- 각 평가지표에 따른 과제별 평점 및 검토의견 제시

◈ **4단계 : 소위원회별 토의를 거친 평가결과 종합**
- 위원별 개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부서별 순위 결정

◈ **5단계 : 전체회의(조정회의)를 통해 부서별 평가등급(점수) 결정**
- 전체회의를 통한 5개 소위원회별 평가 편차를 조정하여 부서별 평가등급(점수 및 순위) 결정

◈ **6단계 : 평가결과 부서 통보 및 이의신청절차 시행 (1~2주)**
- 피평가부서의 이의신청(1회에 한함) 수렴하여 위원 재검토 요청

◈ **7단계 :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 평가위원과의 소통 강화 및 평가 내실화를 위한 **대면회의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는 각종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정성·정량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은 **전체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지표별로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위원장은 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을 참고하여 전체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총평(정성평가)**도 함께 작성

○ 평가총괄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7등급 상대평가를 엄격히 적용

○ 동점 과제에 대해선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선 순위로 평가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	순위(61개 과제)
~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3위 (3개)
5%초과~20%이내	우수	4~12위 (9개)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13~21위 (9개)
35%초과~65%이내	보통	22~39위(18개)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40~48위 (9개)
80%초과~95%이내	미흡	49~57위 (9개)
95% 초과 ~	부진	58~60위 (3개)

* 순위 누적 % = (순위 / 총 과제수) × 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평가결과 이의신청 · 조정

○ 이의신청 대상 (조건)

- 평가기준 적용상 위원의 판단 착오 또는 배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 평가 후 미흡한 항목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재평가 요청
  (자체평가 실적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 제시하여 위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피평가부서의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재평가 요청
- 위원의 고유 판단영역인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불만 제기성 내용
  (자체평가는 '상대평가'이므로, 피평가부서의 판단보다 과소평가되었다는 주관적 의견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이의신청 절차**

① 부서 이의신청 접수 :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의견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의 신청

② 1차 검토(기획총괄과) : 부서 이의신청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이의신청 대상으로 적합한 과제만 평가위원에게 재검토 요청

③ 평가위원의 이의신청서 검토

④ 위원의 재검토결과 부서 통보 및 결과 확정 (필요시 재심)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총평, 과제별 평정 및 정성평가 등을 종합하여 작성

○ 평가 결과에 대한 서술적 분석 제시

- 매우우수, 우수과제의 성과달성 원인 및 성과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우수사례는 확산
- 미흡, 부진과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 및 구체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분석 실시

□ 자체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 과제별 상대등급화, 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내용을 포함하여 과제 관련부서 통보 및 내부망 공개

○ 자체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 국회 소관 상임위(국방위) 제출 및 국방부 홈페이지 공개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 논의사항
○ '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및 자체평가계획(안) 심의	'19. 3월 (기획총괄담당관)	주요정책과제 성과관리계획(성과지표 포함) 및 자체평가지표 등 심의
○ '19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19. 4월 (기획총괄담당관)	자체평가위원 선정 및 소위 분류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형성(계획의 적절성) 평가	'19. 7월 (기획총괄담당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형성 분야 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 변경 심의	'19. 8~9월 (기획총괄담당관)	정책환경 변화 소요를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변경
○ 연말 자체평가 실시	'20. 1월 (기획총괄담당관)	'19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심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절차 흐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업무계획서 작성	평가총괄부서
	⬇	
	평가대상부서 의견 수렴	평가총괄부서
	⬇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서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형성 평가 (7월)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작성	과제담당부서
	⬇	
	분야별 소위원회 점검	소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변경 (8~9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과제 수정·변경 및 계획 재수립	과제담당부서
	⬇	
	과제별 계획 수정사유 타당성 검토	평가총괄부서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하반기 종합평가 ('20. 1월)	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과제담당부서
	⬇	
	과제 추진실적 설명회	소위원회
	⬇	
	소위원회 심사 및 전체회의	자체평가위원회
	⬇ (이의신청·조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 원칙

□ 전략·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실시

□ 자체평가와 개인 성과평가의 연계 강화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평가(성과급 지급) 반영 비율 확대

- 실·국장급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100% 반영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개정 ('15. 6. 30), '16년부터 적용

- 과장급 이상 : 자체평가 결과 성과평가에 40% 반영

  * 자체평가 등급 간 성과급 반영 점수폭(0.4점) 확대·유지로 평가 실효성 강화

□ 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등 환류 강화

○ 점검 및 평가결과 미흡 지적사항 및 개선·보완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 관리

○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관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여 조직·예산 운용의 효율화 도모

2. 평가 결과의 정책 · 예산 ·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개선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평가위원이 과제별 미흡사항의 원인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소관부서는 개선·보완계획을 수립,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관리

- 상반기 중간점검 및 하반기 자체평가 시,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화

'18년 평가결과	'19년 상반기 중간점검	'19년 자체평가
• 미흡·부진과제 ⟶	• 개선여부 점검	
	• 지적사항, 미흡·부진과제 ⟶	• 개선여부 평가

○ ‘정책 환류의 충실성’ 평가 강화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는지의 ‘정책환류 이행실적’을 평가

○ 자체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지속적인 성과 미흡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적극 추진토록 집중 관리

□ **예산분야에 활용**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미흡과제 예산환류 실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국방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과제는 예산 증액 편성
- ‘미흡’ 이하 과제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 **조직분야에 활용**

○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기능 및 정원 조정을 통한 재정비로 조직·인력 효율성 제고

○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별 결과를 분석하여 기능분석, 인력진단, 사무분장 조정 및 조직 재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3.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19년 평가결과 및 ‘20년 평가방향 직원설명회 개최 (’20. 3월)**

○ 참석대상 : 각 부서 총괄 및 성과관리과제 담당

○ 내용 : ’19년도 자체평가 결과 분석(우수사례 및 개선·보완사항) 및 ’20년도 평가 방향에 대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공유·전파 및 직원의 평가업무 이해도 및 역량 제고 노력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19년 자체평가 완료 후

○ 공개방법

-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관리과제별 평가결과를 전 부서 문서 통보 및 내부망 공개
- 국회 소관 상임위(국방위) 제출 및 국방부 홈페이지 공개
- 자체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 평가위원과의 소통 강화

○ 평가위원의 현장방문(점검) 실시 의무화

- 부서별 또는 소위원회별로 평가위원의 소관과제 관련 현장방문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평가위원의 과제(국방업무) 이해도 및 평가역량 강화 (미실시하는 경우 감점 조치)

○ 실·국·부서별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정기적 정책자료 제공

- 국방백서 등 주요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법령개정 사항, 연구용역보고서, 정기 간행물 등 주요 자료의 정기적 제공
- 특히, 부정적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설명(해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관 분과위원에게 제공하여 정책 이해도 제고

○ 실·국·부서별 다양한 소통행사 적극 참여 추진

- 각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시 평가위원을 자문(심의) 위원으로 초청하는 등 정책 공유 기회 확대

□ 부내 직원의 성과관리·평가업무 역량 강화

○ **(교육)** 전 부서 성과관리담당자 대상 외부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성과관리 이해도 및 관심 제고

○ **(전문 컨설팅 실시)** 성과지표에 대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 자체 전문교육 및 맞춤형 자문 실시로 조직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 기타 행정사항

○ 평가등급을 전 평가대상 부서에 공개, **이의신청제도** 운영

- 피평가부서의 이의신청은 연말평가시 소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후 전체회의 의결 전 **1회에 한하며, 소정 양식에 따라 제기**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으로 이력 관리**

- 매년 성과지표 정의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의 이력관리 철저

  * 소관 과제 및 상위 목표체계, 지표 측정방법, 목표 및 실적치 누적자료 등